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 12. 31>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국세환급금 통지서**

일련번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급금권리자	상호(법인명)	환급관서  세무서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환급내용	환급사유	지급요구일	
	세목	지급요구번호	
	환급금	환급금 수령방법	
	환급가산금		
	환급금계		
총당금액			

귀하에게 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 체납액 등에 총당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총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총당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지원과(징세계) 환급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안 내 말 씀**

1. 국세환급금은 귀하께서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귀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환급금 수령방법에 “예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드립니다.” 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께서 신고한 계좌로 이체입금한 것이니 입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 수령방법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수령: 신분증과 이 통지서
  - 나. 대리인이 수령: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장
    - \* 법인 추가서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 임의단체 추가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4.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5.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수령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근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6조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b>위 임 장</b>					<b>영 수 증 서</b>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국세환급금 원정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성 명 (법인명)	인감 날인	주 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인)	주 민 등록번호		수 령 인	성 명	(인)	주 민 등록번호	
	주 소					( ☎ )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납세자 중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려는 납세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절취하여 우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환급금권리 자 (납 세 자)	상 호(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	( ☎ )		
환급내용	환 급 금		세 목	
	지급요구일		지급요구번호	
예금계좌	금융회사명	은행 (우체국)		
	계 좌 번 호			
<p>※ 수취인에 관한 사항과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통지서” 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p> <p><b>첨부 : 본인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b></p> <p>위의 국세환급금을 기재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환급금 발생 시 이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신고인 (인)</p>				
<p>세무서장 귀하</p>				